

구분		내용
1순위 청약자격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02.24.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1.08.24.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이천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 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이천시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배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과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 거주자(기타지역)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공급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청약통장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청약 종합저축 :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2. 청약예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규모 변경 시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② 청약저축 → 청약예금 통장 변경 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예비당첨비율		1. 각 타입별 일반 공급분의 3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이천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청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거나,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